

# 2026학년도 제2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

## 1. 관련

- 가.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18~19조 및 [별표 1]
- 나.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 제9조, 제12~13조 및 [별표 3~4]
- 다.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2, 제22조의4~5 및 [별표 2]
- 라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~21조의2, 제22조의4~5 및 [별표 2]
- 마. 「유치원 및 초등·중등·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」 제3~4조, 제6~9조, 제12조 및 [별표 1~3]
- 바. 2026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

## 2. 신청 대상

- 가.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이 확정된 자로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
- 나. 상담심리전공은 제외하며, '6-라. 전문상담교사(1급) 관련' 참조

## 3. 신청 기간: 2026. 11. 10.(화)~11. 12.(목)

※ '5-나. 의사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' 검사기관별 발급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 준비 요망

## 4. 신청 방법: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

- 가. 방문 제출
  - 1) 제출처: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J417호 대학원교학팀
  - 2) 제출시간: 평일 10:00~17:00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- 나. 등기우편 제출
  - 1) 신청 기간 내 대학원교학팀에 도착한 서류만 접수하며, 우편물 분실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  - 2) 주소: (03016)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, 상명대학교 대학본부 J417호 대학원교학팀

## 5. 제출서류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출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         | [붙임 2] 양식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나.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| 1)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에<br>“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2제1호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”<br>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검사기관에 요청(검사 종류보다 해당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중요함)<br>2) 일부 치료 목적 약물 복용자는 ‘양성’ 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위 문구가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<br>3)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·발급된 서류까지 인정<br>4) 건강검진센터, 정신건강의학과, 가정의학과,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등 발급 가능(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함) |
| 다. 영양사 면허증 사본             | 영양교사(2급) 신청자에 한하며 본교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경우만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성범죄 경력 확인은 ‘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’를 근거로 대학원교학팀에서 종로경찰서에 일괄 요청하여 확인 예정

## 6. 기타 사항

가.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: [붙임 3] 참조

나. 신청 기간 내 미신청,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및 석사학위 취득 기준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
다. 무시험검정 신청 시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
라. 전문상담교사(1급) 관련

1) 전문상담교사(1급) 무시험검정은 상명대학교에서 진행하지 않으며, 졸업 시 ‘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 이수증명서’를 발급함

2) 전문상담교사(1급) 무시험검정은 신청자의 소속 시·도교육청에서 실시함(결격사유 확인 등 포함)

7. 문의처: 대학원교학팀(서울캠퍼스 대학본부 J417호 / 02-2287-6432)